

심 사 보 고 서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55
----------	-----

2021.10.22.(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0월 13일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신형근)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①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 1,644백만원(도 990, 시·군 654)

○ 출연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 공급 확대 등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 내역 : 2022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식

※ 세부내용 ①-③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

○ 기대 효과

- 소상공인 경영악화 등으로 보증 잔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보증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여력 유지
-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한 조기 경기회복 지원 및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

②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 1,000백만원(도비)

○ 출연 목적

- 지역성장의 핵심역량인 기술기반 벤처·창업 여건이 열악하고, 대학 및 연구 기관 등이 보유한 R&D 성과물인 특허의 사업화 전환이 미흡한 상황인 충북에,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플랫폼을 구축

○ 출연 내역 :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출연 1식

※ 세부내용 ②-③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

○ 기대 효과

- 지역 내 R&D와 지역산업·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 확보 → 창업 → 성장 → EXIT(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창업생태계의 구축 등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플랫폼 역할 수행
- 고용창출, 기업규모 확장, 대학 재정 안정화, 투자유치 확대, 기술사업화 모델 정립 등 직접적인 효과와 지역 경쟁력 증대, 대학의 휴먼 특허의 상용화 및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간접 효과 발생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노학)

① 충북신용보증재단

-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1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동 계획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10조(행정지원)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 출연규모는 총 16억 44백만원(도990, 시군654)*으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21년까지 총 591억원(도339, 시군252)이 출연되었음
 - * 시군비 총액 1260백만원 중 청주시는 분담금 606백만원 직접 지급

〈기본재산 국·도·시군비 출연금〉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점유비)	'16까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국 비	325	34.6%	286	-	-	-	24	7.5	7.5
도 비	348.8	37.20%	329	-	-	-	-	9.9	9.9
시군비	264.2	28.2%	239	-	-	-	-	12.6	12.6
계	938	100.0%	854	-	-	-	24	30	30

-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고 정부 특례보증금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 심화 및 폐업 등으로 향후 대위변제(손실) 발생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1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위변제 순증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발 생(A)	228	303	430	415	450	500
회 수(B)	72	61	86	83	100	120
순 증(A-B)	156	242	296	320	350	380

* 대위변제 : 보증부대출금 연체 등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변제)하는 것

* 통상 신규보증 지원 후 1년 초과 3년 이내에 대위변제 발생 급증 추세

- 이에 따라 본 출연계획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한 법정 보증한도¹²⁾ 초과 가능성에 대응하고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법적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무상태 변동 및 향후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출연금누계(A)	1,730	1,808	1,893	1,983	2,073	2,163
조성액	158	78	85	90	90	90
잉여금누계(B)	△100	△226	△376	△546	△731	△931
증감액	△80	△126	△150	△170	△185	△200
기본재산(A+B)	1,630	1,582	1,517	1,437	1,342	1,232

- 다만,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행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많은 대위변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단 재무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과 보증수요 예측 및 세심한 상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 이내 운용
 ※ 신용보증 적정 운용 배수 : 잔여자본금 10배 수준

② 충북테크노파크

-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충북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설립된 재단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가 출연 하고 있음

- 충북은 전국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15~'19 연평균경제성장률 : 5%) 달성 하고 '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¹³⁾ 9.9로 전국 6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20년 기준 충북 기술기반창업은 5,444개로 전국 10위(전국 2.4%), 충북지역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29.1%(14위)이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창업투자회사는 21년 기준 1개소로 상대적으로 지역성장 핵심역량인 기술기반의 벤처·창업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13)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 지역이 과학기술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할 수 있는 능력 평가지표
※ 경기(22.8점)>서울>대전(18.1)>경북(11.1)>울산>충북(9.9)/(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별 창업투자회사 현황〉

(공시회사기준,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2020.7월 기준			2021. 8월 기준		
	회사수	운용규모	자본금	회사수	운용규모	자본금
합계	194	289,258	20,792	252	359,459	23,440
서울	160	251,773	17,094	207	312,951	19,253
부산	8	2,396	308	9	3,578	303
대구	1	1,210	3	1	1,571	4
인천	0	0	0	2	53	167
광주	1	371	134	1	371	134
대전	3	809	121	3	1,058	15
울산	2	915	76	2	1,035	76
경기	14	28,800	1,869	19	34,779	2,176
강원	1	375	40	2	375	60
충청	0	0	0	1	150	50
전라	0	0	0	0	0	0
경상	3	2,247	1,147	4	3,178	1,200
제주	1	360	0	1	360	0

- 또한 '10~'20년 충북 특허·기술이전은 5.5% 불과(출원건수 29,871건 / 기술이전 1,639건)해 대학·연구기관 등 보유 R&D 성과물인 특허 사업화 전환도 미흡한 상황으로 충북의 창업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기술창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충북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 특허·기술 → 사업화(자회사 설립) 선순환을 위한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플랫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사업을 위한 출연의 적정성이 인정됨

- 다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출연하여 총 60억원(도비 30억원, 대학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타시도의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 대학·연구기관에서 투자하는 현물 투자의 가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당초 계획한대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을 투자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또한, 신규 회사를 만드는 만큼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초기 안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전문 CEO와 직원 선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출연금을 지원한 후에는 반드시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강성환	음창규	오숙영	220-3252

기관명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장) : 김교선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청주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규모 : 1본부, 4부 5지점 1센터 - 기관성격 : 출자·출연기관 - 주요사업 :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 								
출자·출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1,644백만원(도비 990, 시군비 654)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구분	사업 기간	2021년 예산액 (출연액)	2022년 요구액	재원별				
	합계		1,644	1,644	1,644	0	990	654	0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2	1,644	1,644	1,644	0	990	654	0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증잔액 급증에 따라 대위변제 등 손실발생 또한 큰 폭의 증가 예상 ○ '19년부터 자본금(기본재산) 잠식 및 '23년 이후부터는 적정 운용 배수(10배)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안정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을 통해 자본금 확충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지도감독 부서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악화로 2020년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2~3배 증가로 손실누적 심화 예상 ○ 적정 운용 배수 내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4. 관련 법령 5. 비용추계서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2021년('20실적)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나' 등급
 ※ 기관장 성과평가 : '가' 등급

○ 감사 : 충청북도(2021), 중소벤처기업부(2016)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매칭(국비:지방비 매칭 25%:75%) 계획이며,
-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보증 등 집중 지원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보증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총 출연액 3,000백만원 중

1,356백만원(국비 750백만원 /청주시 직접 출연금 606백만원) 외 도비 및 10개 시·군 분담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출연금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출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국 비(25%)	1,500	750	750			
도 비(33%)	5,580	990	990	1,200	1,200	1,200
시군비(42%)	7,920	1,260	1,260	1,800	1,800	1,800

※ 3~5차 년도 국비 지원시 도비, 시군비 조정

1-② 출자·출연기관 현황

충북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6022호)			전화번호 : 043-249-5700			
				홈페이지: www.cbsinbo.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03.26.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 허가 - '99.05.10. 업무개시 - '00.03.01. 조합 → 재단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01.02.05. 본점이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5층) - '02.05.09. 충주지점 개점 - '07.03.12. 남부지점 개점 - '09.12.02. 제천지점 개점 - '17.11.13. 혁신도시지점 개점 - '19.12.02. 동청주지점 개점 			기관 형태	출연		
인원현황	계('21.09.30.현원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70명		68명	2명			
임원 (‘21.09.30.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김○○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021.01.01. ~ 2022.12.31.			
	당연직이사(비상임)	신○○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2021.01.01. ~ 직 만료시			
	당연직이사(비상임)	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9.12.21. ~ 직 만료시			
	이사(비상임)	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2019.07.01. ~ 2022.06.30.			
	이사(비상임)	김○○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2021.06.11. ~ 2023.05.25.			
감사(비상임)	장○○	대백공인회계사무소 회계사	2021.06.11. ~ 2024.06.10.				
주요기능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자본금 (단위:백만원)		171,727 (2021. 06. 30.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총 180,726 (도비 '16년까지 / 32,9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채무현황 (백만원) '21.06.30 기준	자산	201,056
	예산액	37,109	44,145	50,301		부채	29,329
	지자체 지원액	-	-	-		자본	171,727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손실	
	12,973			20,609		7,636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2022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경제기업과		출연	1,644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 공급 확대 등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 신용보증 적정 운용 배수 : 잔여 자본금 10배 수준

□ 출연개요

- 사업명 : 2022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기간 : 2022년
- 출연액 : 1,644백만원
 - ※ 도비 990백만원, 시·군비 654백만원
- 주요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채무 보증

□ 산출기초

-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시군 분담 비율
 - 총3,000백만원 : 국비 750(25%), 도비 990(33%), 시·군 1,260(42%)

【 연도별 도비 출연 내역 】

(단위: 억원)

구분	계	'99(설립)	'10년까지	'11	'12	'13	'14	'15	'16	'21
출연금	338.9	100	147	9	11	15	17	18	12	9.9

□ 기대효과

-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
-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한 조기 경기회복 지원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손실액 미충원 시 지속적인 기본재산 감소로 운용 배수 증가
- 운용배수 법정한도(15배 이내) 초과 시 신용보증 정책의 제한적 운용 불가피

①-④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4.5.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기타수입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증잔액 급증에 따라 대위변제 등 손실발생 또한 큰 폭의 증가 예상
- '19년부터 잔여 자본금이 잠식되고, '23년 이후부터 적정운용 배수초과 예상 되므로 자본금 확충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수요 지속대응 여건 마련

3. 비용 추계결과

- 추계기간 : 총 150억, 연 30억원 × 5년간('21년 ~ '25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 '22 : 총 30억 / 국비 7.5(25%), 도비 9.9(33%), 시·군비 12.6(42%)
 - ※ 2022년 국비 25% 매칭 확정으로 보조금 반영
 - '23 ~ '25(3년간) 총 90억 / 도비 36(40%), 시군비 54(60%)
 - ※ 향후 국비 지원 시 변경 반영

4.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출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국비(25%)	1,500	750	750			
도비(33%)	5,580	990	990	1,200	1,200	1,200
시군비(42%)	7,920	1,260	1,260	1,800	1,800	1,800

2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경제기업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혁신창업팀	강성환	박은숙	이슬잎	220-3343

출자·출연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충북테크노파크 ○ 원 장 : 송재빈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출자·출연 사 업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10억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 기간</th> <th rowspan="2">2022년 사업비</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도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 style="border: 2px solid blue;">20</td> <td>20</td> <td>0</td> <td>10</td> <td>0</td> <td>10</td> </tr> <tr> <td>충북연합기술 지주회사 설립</td> <td>2022 ~ 2024</td> <td style="border: 2px solid blue;">20</td> <td>20</td> <td>0</td> <td>10</td> <td>0</td> <td>10</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사업비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0	20	0	10	0	10	충북연합기술 지주회사 설립	2022 ~ 2024	20	20	0	10	0	10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사업비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0	20	0	10	0	10																													
충북연합기술 지주회사 설립	2022 ~ 2024	20	20	0	10	0	10																													
출자·출연 필 요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R&D 성과물인 특허의 사업화 전환이 미흡한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0년 충북 특허의 기술이전 5.5% 불과(출원건수 29,871건 / 기술이전 1,639건) - 충북 특허 중 도내 대학이 창출한 특허는 12.9%로 상당 부분 차지(대학 3,880) ○ 충북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 특허·기술 → 사업화 (자회사설립)' 선순환을 위한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플랫폼 필요성 증대에 따른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출연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관리감독 부서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창업정책은 단편적 정책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기술발굴 → 창업(기술사업화) → 투자 → 성장 → EXIT(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 ○ 지역 내 R&D와 지역산업 및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 및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플랫폼 역할을 수행 할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2.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3. 관련 법령 																																			

2-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사업의 필요성

- 충북은 전국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15~'19 연평균경제성장률 : 5%) 달성. 특히, '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9.9로 전국 6위
 - * 지역이 과학기술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할 수 있는 능력
- 반면, 지역성장 핵심역량인 기술기반의 벤처·창업 여건은 열악
 - (창업현황) '20년 기준 충북 기술기반창업은 5,444개로 전국 10위(전국 2.4%), 전년대비 증감율은 2.2%로 향상되고 있음
 - (투자여건) 전국 252개 창업투자회사 중 228개가 수도권에 집중, 충청권은 4개사(대전3, 충북1)에 불과한 실정 ('21년 8월 기준)
 - (창업기업생존) 충북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3%(전국 10위), 5년 생존율 29.1%(14위), 7년 생존율 21.0%(14위) ('18년 기준/'21년 발표)
- 대학연구기관 등 보유 R&D 성과물인 특허의 사업화 전환이 미흡,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창업 견인 주체 필요
 - 충북의 특허 기술이전은 5.4%에 불과('10~'20년 출원 29,871건, 기술이전 1,639건)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기존 창업정책은 단편적 정책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기술발굴 → 창업(기술사업화) → 투자 → 성장 → EXIT(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
- 지역 내 R&D와 지역산업 및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 및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플랫폼 역할을 수행 할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함

3 출연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합 계	60	-	20	20	20
도 비(50%)	30	-	10	10	10
대 학(50%)	30	-	10	10	10

2-② 출자·출연기관 현황 (재)충북테크노파크

설립근거	법 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 례 :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화번호 : 043-270-2131	
			홈페이지 : www.cbtp.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2003년 12월 설립 - 연혁 · 2006.12. : 통합재단 출범(TP+정보통신재단+바이오재단) · 2012.11.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2014.09.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2014.10. :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 2016.12. : 충북산업진흥계획 3년 연속 S등급 획득으로 441억 원 지역예산확보 · 2017.09. : 국가 및 지역 바이오산업발전 유공 장관상 · 2017.10. : 전국TP 기관 청렴도 평가 1위 · 2017.12.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최우수기관(1위) · 2017.12. : 2017년 지역기업지원 우수기관 장관상 · 2018.12.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 2019.07.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1위) · 2019.12.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국민투표위원회) · 2020.09. : 전국TP 경영실적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1위) · 2021.07.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재인증 획득 		<p>기관형태 (출자, 출연)</p> <p>충청북도 출연기관</p>	
인원현황 (21.9.1. 현원기준)	계	정규직	정원 외	
	151명	150명	1명	
임원 (21.9.1.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비상임, 당연직)	이○○	충청북도 도지사	2010.07.01. ~
	상임이사 (당연직)	송○○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2019.12.02. ~ 2021.12.01
	비상임이사 (당연직)	김○○	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장	2021.01.01. ~
	비상임이사 (당연직)	김○○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	2020.02.10. ~
	비상임이사 (당연직)	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2019.06.05. ~
	비상임이사 (당연직)	한○○	청주시장	2018.07.01. ~
	비상임이사 (당연직)	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12.16. ~
	비상임이사 (선임직)	이○○	제천시장	2019.01.02 ~ 2022.01.01
	비상임이사 (선임직)	조○○	충주시장	2019.01.02 ~ 2022.01.01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2020.07.07 ~ 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이○○	창명제어기술(주) 대표이사			2020.07.07 ~ 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2020.07.07 ~ 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한○○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2020.07.07 ~ 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2020.07.07 ~ 2023.07.06	
	비상임이사 (선임직)	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2020.07.07 ~ 2023.07.06	
	비상임감사 (선임직)	김○○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2013.10.25 ~ 2021.10.24	
	비상임감사 (선임직)	오○○	범무법인 청주로			2013.10.25 ~ 2021.10.24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책기획 : 지역산업정책 기획, 지역산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신성장동력 산업발굴 등 - 기업지원사업 :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술이전, 정보이용, 경영지도, 시험인증, 마케팅 지원 등 - 네트워킹 : 산·학·연·관 연계협력 등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 인력양성 : 대표산업별 전문가 양성, 일자리창출 활성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자본금 (단위: 백만원)		167,138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266.364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1	2020	2019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183,675
	예산액	153,019	164,452	130,794		부채	16,537
	지자체 지원액 (출연금)	400	400	400		자본 (자산-부채)	167,138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8,396				81,406		△3,010

2-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경제기업과		출연	10억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20년 기준 충북 창업현황 중 기술기반창업은 5,444개로 전국 10위 (전국 2.4%), 전년대비 증감율은 2.2%로 향상되고 있음
-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 보유 R&D 성과물인 특허의 사업화 전환이 미흡,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창업 견인 주체 필요
 - 충북의 특허 기술이전은 5.4%에 불과(10~20년 출원 29,871건, 기술이전 1,639건)
- 충북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 특허·기술 → 사업화 (자회사설립) 선순환을 위한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플랫폼 필요성 증대

□ 출연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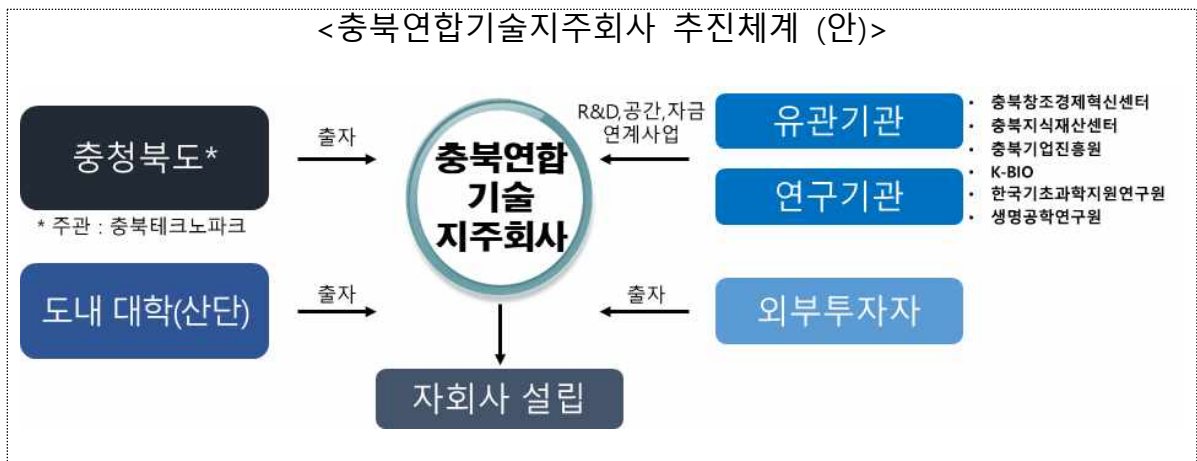
- 사업명 :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 기간 : 2022. 1. ~ 12. ※ 총 사업기간 : '22 ~ '24(3년간)
- 출연액 : 10억(도비)
- 총사업비 : 60억(도비 30, 대학 30) ※ 도비 매년 10억씩 3개년 출연

(단위 : 억원)

재원	사업비	연차별 출연계획(안)		
		2022	2023	2024
계	60	20	20	20
도비	30	10	10	10
대학	30	10	10	10

□ 사업내용

- 참여기관 : 충청북도(충북TP), 7개 대학(충북대, 건국대글로벌, 교통대, 청주대, 도립대, 충청대, 우석대 진천캠퍼스)
- 추진체계
 - (충북도 및 대학) 충북연합기술지주에 현금·현물 출자
 - (유관기관) 공동 R&D사업, 공간·자금지원, 연계사업 추진 등 적극 지원
 - (지주회사) 창업형 기술사업화, 공공사업수행, 컨설팅·교육, 펀드 운용 등 사업수익 창출 및 전주기 지원 창업플랫폼 역할수행



□ 기대효과

- 지역 내 R&D와 지역산업·기업 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플랫폼 역할
- ‘발굴 → 창업(기술사업화) → 성장 → EXIT(회수) → 재투자’ 지역투자생태계 구축
 - 직접효과 : 신규 고용창출, 기업의 절대규모 확장, 자회사 EXIT 등 자본금 회수를 통한 대학의 재정 안정화, 타지역 기업의 현금 투자유치 확대, 기술사업화 모델 정립 등
 - 간접효과 : 지역경쟁력 확보, 연구자 의욕고취 및 대학 휴먼특허의 상용화,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R&D성과물인 특허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창업 견인주체의 부재로, 지역 혁신성장과 미래 新산업 육성기반 상실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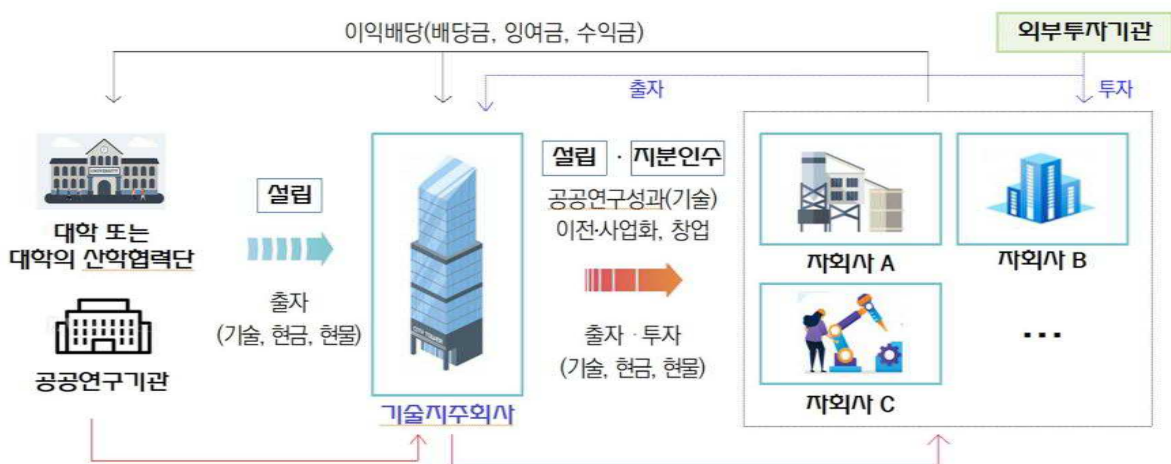
<참고> 기술지주회사 개념

- 정의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한 지분인수 또는 공동지배하는 지주회사
 - * 기술사업화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요건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상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 주요현황 : 대학의 24.5% 참여(전체 417개, 참여 102개)

유 형	개수(70개)	지주회사
연합형	전국 8 (충북 -)	· (지역연합) 강원, 전북, 대경, 부산, 광주, 전남, 포항 · (대학연합) 엔포유
단독형	전국 62 (충북 2)	· 충북대, 교통대,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충남대 등

※ 연합형 : 특정지역 중심으로 복수의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
 단독형 : 대학 산학협력단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형태

○ 기술지주회사 체계도



2-④ 관 령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지원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부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의 차입금 및 수익금

○ 지식재산기본법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